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1 으뜸애드래픽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3 으뜸애드래픽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2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4 으뜸애드래픽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5 으뜸애드래픽

목 차

연간보고서 요약 ····· 1

제1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제1장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과정 ····· 11
1.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 ····· 11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과정 ····· 13
3.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준비 과정 ····· 15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의 ····· 17

제2장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과 기능 ····· 21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예산 ····· 21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 26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 31
제1절 개요 ····· 3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32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 32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 52
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권고 ····· 64
4. 인권 상황 실태조사 ····· 70
제3절 평가 ····· 84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6 으뜸애드래픽

목 차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 87
제1절 개요 ····· 8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88
1. 상담 및 진정접수의 활성화 ····· 88
2.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 유형 분류 ····· 92
3. 면전진정 접수의 활성화 ····· 103
제3절 평가 ····· 110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 113
제1절 개요 ····· 1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14
1. 개관 ····· 114
2. 검찰 · 경찰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 119
3. 구금 ·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 121
4. 기타 국가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 · 구제 ····· 125
5.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 128
6. 직권조사 ····· 130
7. 기타 진정사건 조사 · 구제 ····· 136
제3절 평가 ····· 137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 139
제1절 개요 ····· 13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40
1. 개관 ····· 140
2. 성 차별의 조사 · 구제 ····· 142
3. 장애인 차별의 조사 · 구제 ····· 144
4. 연령 차별의 조사 · 구제 ····· 146
5.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의 조사 · 구제 ····· 148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7 으뜸애드래픽

6. 인종 ·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의 조사 · 구제 ····· 150
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의 조사 · 구제 ····· 151
8. 기타 사유에 의한 차별의 조사 · 구제 ····· 152
제3절 평가 ····· 154

제5장 교육 · 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 157
제1절 개요 ····· 157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58
1. 공무원 인권교육 ····· 158
2. 학교 인권교육 ····· 161
3. 인권문화 콘텐츠 사업 ····· 163
4. 인권 홍보사업 체계 구축 ····· 165
5. 인권 정보자료 서비스 체제 구축 ····· 166
제3절 평가 ····· 170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173
제1절 개요 ····· 17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73
1. 인권 시민단체와 협력강화 ····· 173
2. 국제교류 협력체계 구축 ····· 176
제3절 평가 ····· 189

제7장 기획사업: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 ····· 191
제1절 개요 ····· 19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 192
1. 아동 · 청소년 시설 방문조사 ····· 192
2. 노인시설 방문조사 ····· 196
3. 아동과 노인 관련 실태조사 ····· 198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8 으뜸애드래픽

4. 인권 동화책 발간 사업 ····· 198
제3절 평가 ····· 199

제3편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

제1장 주요 인권 현안 ····· 203
1. 국가보안법 개폐 ····· 203
2. 보호감호제도 개선 ····· 204
3.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 ····· 205
4. 차별금지기본법(가칭) 제정 ····· 205
5.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 206
6. 사형제도 개선 ····· 207
7.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 208
8.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 209
9. 도 · 감청 등 사생활 침해방지 ····· 209
10. 인권 관련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 210

제2장 향후과제 및 개선대책 ····· 211
제1절 인권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개발 ····· 211
1. 국가인권정책실행계획 수립 · 시행 ····· 211
2. 주요 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Task Force Team 운영 ····· 213
3.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 수립 ····· 213
4.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215
제2절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216
1. 진정사건 조사 · 구제의 실효성 확보 ····· 216
2. 지방사무소 설치 ····· 217
3. 국가기관간 협의체 구성 ····· 218
4. 인사 · 예산의 독립성 확보 ····· 219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9 으뜸애드래픽

제3절 인권 관련 법령조사 및 인권 상황 실태조사 ····· 220
1. 인권 관련 법령검토 및 개선권고 ····· 220
2. 국제적 기준에 부합된 법령정비 ····· 221
3. 인권상황 실태조사 ····· 222
제4절 위원회 내부 역량 제고 방안 ····· 224
1. 직원의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 제고 ····· 224
2. 업무량 폭주 해소를 위한 인력보강 ····· 225
제5절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226
1. 국내 인권단체와 협력 토대 마련 ····· 226
2. 국제 인권기구와 교류 증진 ····· 227

부 록

1. 국가인권위원회 제 · 개정 법령 ····· 233
2. 국가인권위원회법 ····· 236
3.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 258
4.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연혁 및 주요업무 일지 ····· 261
5. 국제기구 권고사항 ····· 287
6.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 NGO 현황 ····· 295
7.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가입 현황 ····· 300
8. 발간자료 목록 ····· 304
9. 진정서 양식 ····· 307
10. 배움터 사용허가 신청서 ····· 315

표 목 차

〈표 1-2-1〉 2002년도 예산 ····· 24
〈표 1-2-2〉 직원 유형별 현황 ····· 25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32
〈표 2-1-2〉 반인도적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별법안 주요 골자 ····· 47
〈표 2-1-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 주요 골자 ····· 49
〈표 2-1-4〉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권고 ····· 53
〈표 2-1-5〉 외국인력 현황 ····· 57
〈표 2-1-6〉 직권수정 권고내용 요약 ····· 61
〈표 2-1-7〉 국제인권기준 국내이행 권고 ····· 64
〈표 2-1-8〉 실태조사 과제 ····· 70
〈표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 ····· 89
〈표 2-2-2〉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 ····· 93
〈표 2-2-3〉 상담처리 결과 ····· 95
〈표 2-2-4〉 상담 유형 ····· 97
〈표 2-2-5〉 인권침해의 내용 ····· 99
〈표 2-2-6〉 피진정인별 현황 ····· 100
〈표 2-2-7〉 피진정인별 차별사유 ····· 101
〈표 2-2-8〉 차별 영역 ····· 102
〈표 2-2-9〉 기타 유형 ····· 103
〈표 2-2-10〉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건수 ····· 104
〈표 2-2-11〉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105
〈표 2-2-12〉 면전진정 신청 철회 사유 ····· 108
〈표 2-2-13〉 면전진정 신청 사례 중 상담종결 사유 ····· 109
〈표 2-3-1〉 인권침해 사건 처리 현황 ····· 115
〈표 2-3-2〉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 116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11 으뜸애드래픽

〈표 2-3-3〉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각하사유별 내역 ····· 116
〈표 2-3-4〉 진정대상 기관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 117
〈표 2-3-5〉 인권침해 진정사건 주요 조치내역 ····· 117
〈표 2-3-6〉 기타 진정사건 진정 및 처리 유형별 현황 ····· 136
〈표 2-3-7〉 기타 진정사건의 각하사유별 내역 ····· 137
〈표 2-4-1〉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140
〈표 2-4-2〉 차별사유별 접수 현황 ····· 141
〈표 2-4-3〉 각하사유별 처리 현황 ····· 141
〈표 2-4-4〉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조치내역 ····· 142
〈표 2-4-5〉 차별행위 진정사건 주요 진정내용 ····· 153
〈표 2-5-1〉 법집행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59
〈표 2-5-2〉 분야별 인권교육 강사단 수 ····· 159
〈표 2-5-3〉 공무원 인권교육 강의안 시리즈 ····· 160
〈표 2-5-4〉 인권영화 제작 현황 ····· 163
〈표 2-5-5〉 인권만화 제작 현황 ····· 164
〈표 2-5-6〉 인권자료실 장서 현황 ····· 168
〈표 2-6-1〉 국제회의 참가 현황 ····· 176
〈표 2-6-2〉 국외인사 위원회 방문 현황 ····· 185
〈표 2-6-3〉 국제연대서한 발송 현황 ····· 187
〈표 3-1-1〉 인권협약중 유보조항 ····· 210
〈표 3-1-2〉 인권침해 관련 주요 조사대상기관 ····· 218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12 으뜸애드래픽

그림목차

〈그림 1-2-1〉 위원회 및 사무처 기구도 ····· 23
〈그림 1-2-2〉 직원 성별 분포 ····· 25
〈그림 1-2-3〉 외부채용자 분포 ····· 25
〈그림 1-2-4〉 진정사건 처리 흐름도 ····· 28
〈그림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 ····· 90
〈그림 2-2-2〉 진정사건 분류 ····· 92
〈그림 2-2-3〉 피진정기관별 분류 ····· 98
〈그림 2-2-4〉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 104

연간보고서 요약

2001년 11월에 출범한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인권 보호 · 신장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이라는 큰 이정표를 세웠다.

이는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견인차로서, 인권 관련 법령 · 정책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구 탄생을 의미한다.

국가인권기구는 19세기 초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 옴부즈맨(Ombudsman)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하고 1976년 양대 국제인권규약, 즉 「경제적 · 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과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활성화되었다. 이어 1991년 파리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을 결의함에 따라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준거틀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6월 빈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이후 제도권에서도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설립 준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 및 독립성 등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에 3년여 동안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다.

결국 2001년 4월에 이르러서야 입법 · 사법 ·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위원회법")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직제령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위원회 간의 이견이 속출하는 등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후 사무처가 구성된 2002년 4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2 으뜸애드래픽

월 1일까지 4개월여 동안 한 명의 직원도 없이 파행적으로 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의 의의는 첫째 인권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 즉 인권 관련 '준국제기구'의 국내적 출범, 둘째 기존 권력기관을 견제 · 감시할 수 있도록 입법 · 사법 · 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국가기관의 탄생, 셋째 '인권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인권 감시자 및 인권 옹호자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신속 ·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국가기관의 탄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대통령안 포함)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3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진정사건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와 특정 사항에 대해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다.

사무처 조직은 당초 1실 4국 2관 25과 1소속기관, 정원 321명을 정부의 조직담당 부처에 요구하였으나, 협의 결과 인권정책실이 인권정책국으로 축소 · 조정되는 등 위원회 요구안보다 대폭 축소된 5국 18과 1소속기관, 총원 215명(정원 180명, 파견 공무원 20명, 전문 계약직 공무원 15명)으로 조정되었다.

사실상 출범 원년인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의 활동과 실적은 이 보고서 제2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3 으뜸애드래픽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관련한 주요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2002년 한 해 동안 위원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등 16개 인권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 등 6개 정부 정책, 그리고 국제인권규약 관련 정부 보고서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 · 청소년 영역 등 24개 과제에 대하여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관련 업무 수행을 통해, 그 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 했던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인권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여 위원회의 인권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에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 혹은 상담과 관련된 위원회의 주요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기부터 전화, 방문(대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접수를 받았으며, 면전진정제도를 통해 구금 · 보호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을 접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사항과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안내 및 회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민원 안내와 인권상담 기능을 강화하였다.

위원회가 진정 접수를 시작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진정사건은 3593건, 상담은 3249건, 안내는 9417건으로 총 1만 6259건에 이르는 상담 및 민원이 접수되었다. 진정 접수된 총 3593건 중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2833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189건으로 5.3%를 차지함으로써 차별행위보다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총 2833건 중에서 1113건이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진정건수의 39.3%를 차지해 가장 높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4 으뜸애드래픽

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은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이들은 각각 839건, 300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중 29.6%, 10.6%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인권침해 대상은 구금시설과 경찰 · 검찰 등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사건을 이송받은 조사국의 조사 · 구제 활동 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을 다루고 있다. 위원회 출범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인권침해 진정사건 2833건 중에서 1360건을 처리하고, 1473건은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처리율은 접수사건 대비 48.0%인데, 처리율이 낮은 이유로 조사 인력의 절대 부족, 조사 기법의 미숙 및 관계 기관들의 미온적인 협조 등을 들 수 있다.

위원회가 처리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진정대상 기관별 조사 처리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 ·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국가기관(78.0%), 검찰(63.0%), 경찰(44.8%), 보호시설(41.2%), 군대 관련(39.1%), 구금시설(35.7%) 순이며, 고발 · 권고 · 합의권고 등이 인용된 경우는 검찰, 경찰, 구금시설, 기타 국가기관 분야다.

위원회는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구제조치(법 제48조) 또는 직권조사(법 제30조제3항)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진주교도소 AIDS 환자 수용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건의 권고' 등 3건의 긴급구제조치, 그리고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등 2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권침해행위 조사 · 구제에 대한 선례 및 경험 부족, 조사 권한의 한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수사기관 · 구금시설 관련 진정사건 처리를 통하여 해당 기관 스스로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보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권침해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아울러 수사관행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5 으뜸애드래픽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부분에서는 국가기관, 공·사 기업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발생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활동 추진실적을 다루고 있다.

위원회 출범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차별사건은 모두 189건으로, 이 가운데 102건을 처리하고, 87건은 조사 또는 검토중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 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 차별, 용모 등 신체조건에 의한 차별, 인종·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등 법이 정한 18개 차별 분야에 대해서 조사·구제하였다. 처리한 사건 중에는 진정인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구제한 사건도 1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인권침해행위에 초점이 모아져 차별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으며, 차별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보편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차별 유형 판단기준 등도 채 정립되지 않는 등 한계점들이 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 임용에서 장애인 차별, 교수 임용에서 나이 차별, '살색' 등 피부색에 대한 차별문제 등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진일보시킨 점은 위원회가 일구어 낸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권교육 및 홍보에 주력해 온 위원회의 활동 및 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보편적 인권문화를 일궈 내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실시, 이를 위한 인력 기반으로 강사단 구축 및 물적 기반이 되는 인권교육 자료개발이 필요하다. 위원회에서는 국가공권력을 직접 행사하고 있는 검찰·경찰·교정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검찰·경찰·교정 공무원 및 교사용 인권교육 교재 및 영상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한편, 국민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6 으뜸애드래픽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각종 대중적 문화 콘텐츠 사업을 기획하고, 인권동화 · 만화 · 영화 · 광고 제작, 언론 및 홈페이지를 통한 인권 홍보, 진정 안내 및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제6장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부분에서는 민간 부문의 활발한 인권옹호활동을 지원하고 이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협력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 추진실적을 기술하고 있다.

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인 2001년 8월부터 2002년 말까지 총 15회에 걸쳐 민간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위원회 '배움터' 시설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인권 관련 학술행사,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에 무료로 개방해 시민사회의 여론형성과 인권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인권단체 실무자들의 효율적인 상담업무를 돕기 위하여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의 정보를 종합한 「인권실무핸드북」을 제작하였으며, 2000여 시민사회단체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기본 토대 마련은 물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인권 관련회의,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워크숍, 외국인사 초청 방문 및 국제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였다. 특히, 2002년 11월 아 · 태 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PF)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인권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7장 '기획사업: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 부분에서는 가족해체에 따라 발생한 아동, 청소년, 노인들의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시설거주 아동 및 노인에 대한 인권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 시행된 2002년 기획사업의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기획사업은 어린이 · 노인의 인권문제를 우리 사회에 제기하고 이들의 인권문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7 으뜸애드래픽

제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사회 전반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며, 아동 · 노인의 인권문제 등이 우리 주위에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인식시키고자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획사업이 위원회의 여타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였고, 아동 및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음으로 인해 첫 해의 기획사업은 문제제기 수준에 그치고 말았는데 이는 아쉬운 부분이다.

제3편에서는 지난 1년간의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보호 · 향상을 위한 과제 및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은 **'주요 인권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법 · 제도의 정비 과제로 국가보안법 개폐, 보호감호제도 개선, 비정규직 차별문제 해소,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반인권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사형제도 개선, 구금시설 내 의료권 보장,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 도 · 감청 등 사생활 침해 방지, 인권 관련 미가입 국제협약 가입 및 유보사항 철회 촉구 등을 선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및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 신장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과제 개발, 인권보호 기능강화를 위한 위원회법 개정, 인권 관련 법령조사 및 광범위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위원회의 내부역량제고 방안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정부와 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권 신장을 위해 고민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원회의 주요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로 정부가 정책 수립시 인권을 주요한 가치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둘째, 그 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교도소 · 군 영창 등 구금시설과 정신병원 · 양로원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차별행위 진정사건 조사 및 홍보를 통하여 평등권

위원회도비라~요약 2003.4.3 11:29 AM 페이지8 으뜸애드래픽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선도하였다. 넷째, 인권교육 교재 발간 · 배포, 전문 강사단 구성, 순회 인권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검찰 · 경찰 · 교도관 · 일선 교사 등 공직자의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다섯째, 아 · 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가입 및 국가인권기구간의 교차방문 등으로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주요 인권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점과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반인권적인 관행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발간할 인권백서에 자세히 수록할 예정이다.

이러한 위원회 출범 원년의 성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다소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법령 ·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벌일 것이며, 위원회 내부의 자기 성찰을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도록 선도하는 인권 감시자이자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